

(표지와 같은디자인의 면지)



##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 토론회

구분	세부내용
제1회	주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내용: 산업구조측면에서 한계기업이 발생하게 된 배경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좌장: 홍영표 국회의원
	발표: 이필상 교수(서울대학교), 하준 박사(산업연구원) 토론: 윤석헌(前 송실대학교 교수), 이상빈 교수(한양대학교),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조영철 박사(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제2회	주제: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내용: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2일(목)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장: 윤희중 국회의원
	발표: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토론: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김경울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제3회	주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자원마련 방안”
	내용: 구조조정을 위한 자원마련 방안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7일(화)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좌장: 김정우 국회의원
	발표: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토론: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제4회	주제: “구조조정기의 실업대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내용: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대규모 실업과 사회보험의 역할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목)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좌장: 이인영 국회의원
	발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 박성국 대표(매일노동뉴스),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이상호 박사(前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6년 6월 2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좌 장 : 윤호중 국회의원

발 제 :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토 론 :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김경울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 목 차

## 발·제·문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 1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 토·론·문

- 김상조 교수(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 13
- 박정수 경제선임기자(한겨레신문) ..... 17
- 김기식 운영위원장(더미래연구소) ..... 25
- 김경울 집행위원장(참여연대, 회계사) ..... 31



발제문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

## 1.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절차 (1)

- **채권은행(채권단)과 기업의 자율협약**
  - 채권단은 **기업청산 시 회수할 수 있는 채권 금액과 채권의 일부를 탕감(채무재조정)해 줌으로써 기업이 정상화되어 미래에 회수할 수 있는 채권 금액**을 비교해 자율협약에 임할 지 또는 기업청산을 요구할 지 결정.
  - 경영자, 주주 등은 **기업청산 시 잔여 가치와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의 감자나 사재출연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기업 정상화에 따른 순편익**을 비교해, 자율협약에 임할 지 또는 기업청산을 요구할 지 결정.
  - 노동자들도 **기업청산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편익** (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 과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삭감 등을 통해 기업 정상화에 따른 순편익**을 비교함.
- **즉, 기업청산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credible threat) 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음.**

##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절차 (2)

- **기업청산 및 회생절차**
  - 기업이 청산 및 회생절차에 돌입할 때, 주주와 채권자 모두 기업 청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유인이 있음.
  - 따라서 **기업 청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자를 법원이 선정하도록 함.
  - 결국, 기업청산을 통한 사업재편은 효율적이게 됨.
- **그러므로,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절차는.**
  - 적대적 M&A 위협처럼 **효율적 경영을 유인**하는 시장기제이며,
  -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주주, 주주, 채권자 순으로 지게** 하며,
  - 따라서 주주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임.

## 제조업 기업 도산과 공적자금 지원

-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기업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례는 매우 예외적**임.
  - 노키아가 몰락할 때도 핀란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음.
  - 2009년 미국의 GM 및 크라이슬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매우 예외적.
  -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 (**systemic risk**) 될 수 있는 은행산업이나 보험산업이 아닌 이상 공적자금 투입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음.
-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기업의 도산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
  - 사양 산업 (falling industry)에 속한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자금의 낭비로 귀결.
  - 사양 산업이 아닌 산업에서, 특정 기업의 실패는 더 효율적 기업이나 새로운 진입기업이 대체됨.

## 공적자금 지원 방식

-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경우에도, **공적자금 투자의 비용과 사회적 편익(실업 및 조세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에 대한 계산이 필요**함.
  - 정부는 **기존 기업 청산 후 새로운 기업에 출자**.
  - 새로운 기업은 청산기업의 자산 및 고용 승계
  - 새로운 기업에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빠른 시기 안에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재편을 실시하도록 성과연봉 계약.
  -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평가와 책임소재가 분명해짐.
- 2009년 미국의 **GM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사례**.
  - 미 재무부 (60.8%), 캐나다 정부 (11.7%), VEBA (Voluntary Benefit Association, 17.5%+2.5%), Old GM (10%) 등의 출자로 New GM 설립.
  - 약 51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이 지원되었고, 120억 달러를 회수하지 못함.
  - 2009년 6월 이후 약 341,000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창출 (미 재무부 평가).

## 2. 현행 구조조정 방식

### 현행 구조조정 절차

- 부실 징후 기업에 국책은행 또는 특수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됨.
-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발생과 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국책은행의 지원 확대.
- 국책의 부실 대출로 인한 BIS 비율 하락을 공적자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보충해 줌.
- 채무재조정 후, (1) 재벌총수는 경영권을 되찾거나 (2) 정부부주도의 사업재편후 경영권을 되찾거나, (3) 회생 불가능한 경우 파산 절차를 밟음.

## STX조선해양 사례

- 2013년 4월 채권단이 **STX조선**을 **자율협약** 형태로 지원키로 결정했을 때, **우리·KEB하나·신한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 3곳은 지원 불가를 선언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감.**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은** 채권단에 남아 **자금지원을 강행.**
  - 흥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 서별관회의에서 당국에 손실보전과 면책 보장을 요구. (연합뉴스, 2016.05.27.)
  - STX조선해양 대출금 현황 (2016.05.25. 현재): 산업은행 (3조원), NH농협은행 (1.1조원), 수출입은행 (1조원), 무역보험공사 (0.06조원), 기타은행 (0.7조원).
- 지난해 진행한 **정기 재실사에서** 채권단은 **"추가 리스크 부담 없이 회사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2016년 하반기까지 추가 신규자금 지원 없이 정상 운영되고 2017년부터 안정적인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4천억원을 추가로 지원.**
- STX조선은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돌입한 이후 신규 자금지원만 **4조5천억원을 지원받고 38개월간 구조조정을 이어갔으나 2015년 5월 25일 법정관리행 결정.**

## 도덕적 해이의 핵심 고리: 국책 (특수) 은행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과 회사채 매입의 대부분을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이 총당**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약 1.77조원으로, 이중 특수은행(산은, 수은, 농협) 비중은 각각 77.6%와 68.4%임
  - 해운사를 돕기 위해 201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 규모는 현대상선 7천억원, 한진해운 8천억원 수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이 중 9천억원 정도를 보증한 것으로 추정됨.
  -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권의 익스포저는 21.7조원이며, 특수은행 (수은 12.5조원, 산은 4.1조원, 농협 1.6조원) 비중이 84.3%임
- **국책은행의 지원은 공적자금의 자동 투입으로 이해되는 경향.**
  -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인해 신용위험도를 B등급으로 평가.
  - 따라서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에 대해 채권은행들은 '정상'으로 분류.
- **재벌과 구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속으로 도덕적 해이 심화**
  -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의 24%가 정책금융. (2014년 말 기준)
  -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 해운 등에 정책금융 비중이 높음.
  - 해운·조선업체 대출금만 산업은행 8조3천800억원, 수출입은행 12조8천400억원 등 21조원 이상.

## 현행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 현행 구조조정은 **정부주도적**이며, **국민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움**.
  - 재벌총수일가나 공기업 경영자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책(특수)은행으로 전가.
  - 국책은행은 부실대출로 인한 경영 압박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부실대출을 남발.
  -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 총당이라는 핑계로 공적자금 지원을 남발.
  - 결국 **기업부실의 책임을 국민, 채권은행, 주주가 지는 순서**가 됨.
- 따라서 현행 구조조정 절차는
  - 국책은행과 공기업 경영진, 재벌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 **기업 퇴출**이 시장의 평가가 아닌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지게 함.

## 현행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2)

- 현행 구조조정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결과이며 동시에 이를 공고화 시킴.
  - 정부와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재무구조재조정과 사업재편은 시장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기보다는 **인맥과 로비로 결정**되기 쉬움.
  - 공적자금 투입 규모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현행 방식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관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 현행 구조조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재벌총수나 공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국책은행 관계자 및 정부 관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짐**.
  - 총수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대주주 감자 등도 결국 청산될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되도록 하는 꼼수일 수 있음.
  - 사실상 정부 관료들의 지시로 이뤄지는 국책은행들의 부실기업 지원에 대해 국책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음.
  - 또한 검증될 수 없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정책 판단을 했다는 관료들의 항변에 대해 로비 등의 반대 물증을 찾기도 어려움.

### 3. 정책 제언

### 현행 구조조정 방식 유지론에 대한 비판

#### ➤ 현행 방식 유지 및 보완에 대한 주장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과도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 국책은행의 지배구조나 평가 방식 변경으로 도덕적 해이 최소화.

#### ➤ 주장의 문제점

- 현행 방식의 유지가 자본시장과 법원주도 회생절차의 미발달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함.
- 국책은행의 지배구조나 평가 방식 변경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은 지난 20년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보여주며, 오히려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관치금융만 심화시킬 수 있음.
- 관치금융과 국책은행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
- 총수일가와 공기업 경영자들에게 적합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음.
-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본격적을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게 중요.

## 단기적 대책 (1)

### ➤ 해운 및 조선 기업 재무구조조정 및 사업구조조정

- 일정기간을 정해, **국책은행을 통해 추가적 자금을 지원 없이**, 회사채 발행, 신규 출자, 대주주 출자, 민간기관의 대출, 부분 매각 등의 **자구노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 돌입.**
- 기업 청산 시,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새로운 회사에 출자하는 GM 방식을 따를 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한 평가를 국회에서 검증.**
- 청산 시 사업구조조정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통해 추진.
- 법원을 통한 청산절차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기업청산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신속한 입법이 필요.**

### ➤ 국채(특수)은행 재무구조조정 및 사업구조조정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해운 및 조선 기업들이 청산에 돌입할 때,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자구계획과 자본확충 규모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
- 정부는 **국책은행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적자금 출자 승인 요청.**
-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책은행에 추가 출자하며, 국책은행 경영진, 이사회, 실무 책임자에 대한 문책.
- 대통령은 두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과 담당자 문책.

## 단기적 대책 (2)

### ➤ 요약하면

-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면 중단.**
-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를 개시.
-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
- **시장주도적 구조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주주, 주주, 채권자 순으로 책임을 묻는 핵심.**

### ➤ 정부는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필요한 기금과 프로그램을 확충에 재정 지출 확대 등 정책적 초점을 이동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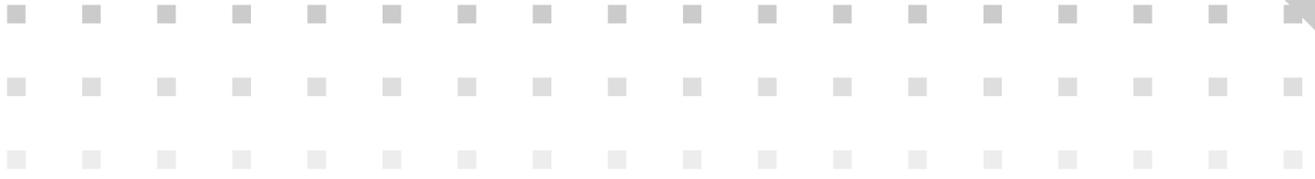
-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해양조선의 경우, 노키아에서 시행했던 '브리짓 프로그램'과 유사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도 고려
-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관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함.

## 중장기적 대책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통폐합해야 함.**
  - 국책은행들을 통한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을 하는 국책은행이 없어야 함.
-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과 주식시장을 통한 경영 감시 및 기업 청산이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필요**
  - 반복되는 기업 부실과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은 은행 대출과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 재벌과 관치 금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
  -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은 자본으로 비정상적 출자 관계를 이용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필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산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

# 감사합니다





# 토론문 1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경제개혁연대 소장)





# 박상인 교수의 「구조조정의 유인 체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토론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 토론회’ (2회)

2016.6.2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sjkim4059@hansung.ac.kr

## 1. 용어의 엄밀한 정의 필요

구조조정 수단

- 자본시장의 수단,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워크아웃(기축법), 회생 및 청산(통합도산법)

구제금융의 수단

- 재정, 공적자금(공자법), 양적완화(중앙은행 발권력)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절차?

- 어떤 시장?, 어느 market player? pricing을 위한 정보?

## 2.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 □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단

- 자본시장(PEF, M&A)과 도산법원: 원칙 but 예외적 cf) 미국
- 대다수 국가에서는 채권자-채무자 간의 사적 구조조정 절차로 보완: 광범위하게 사용 cf) 영국 London approach
  - 신뢰받는 중재자,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심사 허용

### □ 한국의 문제

- 자본시장과 도산법원의 미성숙
- 채권은행(국책은행) 주도 구조조정 절차에 과도하게 의존
- 악순환

### □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 워크아웃/자율협약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가능한가?
- 사적 자치는 진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규율 필요
- 시장과 법원의 발전은 장기적 진화의 과정

3

## 3. 책임 추궁

### □ 최우선 과제: 법률적 책임 추궁

- 의사결정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제재
- 검찰·감독당국의 엄정한 법집행 &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
- 이것이 기본이자 핵심, 물론 지난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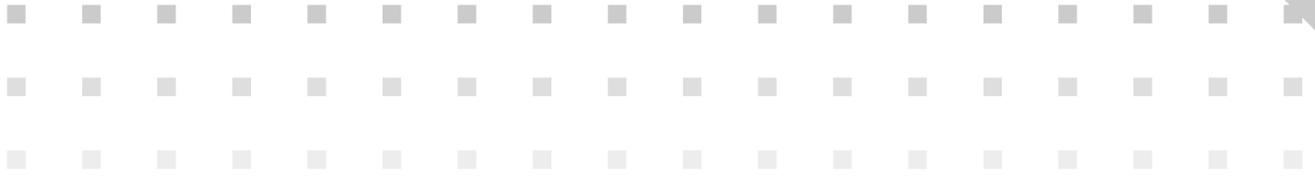
### □ 지배주주의 자구노력 인정 조건 및 범위

- 불법·부당행위가 없다는 조건 하에, 지배주주의 자구노력 + 경영권 유지
- 자구노력의 의지와 능력이 없을 경우, 즉각 경영권 교체 : 시장(M&A)과 법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간 정거장으로서만 채권은행 관리 허용

### □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

-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공식화
-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감독

4



## 토론문 2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 토 론 문 2

곽정수 경제선임기자 (한겨레신문)

### □ 최근 부실경영 책임론 부상

- 정치권과 감독당국, 시민노동계가 부실경영과 관련한 대주주(총수), 채권단 책임론을 공통적으로 제기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5월23일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당시)
-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주주는 기업부실에 상응하는 고통분담을 채권자, 근로자와 함께 져야 한다. 사재출연이나 경영포기각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4월26일 제3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때)
-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재벌총수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강조 (5월11일 기자회견)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학자들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 청와대, 관련 정부부처 등을 망라한 부실 책임자에게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5월30일 <부실기업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동선언)

### □ 부실경영 책임론의 필요성

- 대주주, 채권단, 금융감독당국 등 부실기업 관련자들이 서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부실규모를 키워 결국 국가경제에 큰 재앙을 초래 (STX조선 지원 관련 흥기택 산업은행장의 면책보장 요구와 채권단의 지난해 정기 재실사 사례)
- 부실기업 ‘폭탄돌리기’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부실경영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

## □ 겹도는 부실경영 책임 추궁

### 1. 현대상선 경우

- 현정은 회장은 자율협약을 맺으며 300억원을 사재출연하고 경영권 포기각서
- 하지만 현 회장의 사재출연액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예상 규모인 7천억원의 4%에 불과해 적절성에 의문

### 2. 한진해운 경우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자율협약을 맺으면서 자구안을 냈지만, 사재출연 등 고통분담 방안은 제외
- 한진은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룹 전체로 유상증자, 대여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이미 8200억원을 지원했고, 한진해운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룹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지원 여력 없고, 그룹 정상화에 전력에 쏟아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3월말 기준 931%)

### 3.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경우

-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해운사나 대우조선과는 처지가 다르다며 대주주 책임론에 모두 부정적
- 현대중 노조는 최근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이 2003년부터 10년간 받아간 배당이 2700억원에 달한다며 대규모 희망퇴직에 상응하는 사재출연 등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현대중은 “대주주는 회사지분 10.1%를 갖고 있을 뿐 아무런 공식 직함을 맡지 않고 있고, 배당금도 40%를 세금으로 낸 뒤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정책연구원에 각각 수백억원씩 기부했다. 회사 주식을 제외하고는 사재출연을 할 현금이 없다”고 반박
- 삼성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삼성중공업 문제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불만
- 삼성은 “삼성중공업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대우조선과는 처지가 다르다”고 강조

4. 채권단, 금융감독당국, 회계법인의 책임 규명과 추궁은 실질적 진척 없음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객관적 근거없이 부실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부실규모를 오히려 키웠고,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사태를 방치
  - 회계법인이 부실 회계감사를 한 책임 추궁 필요
  - 감사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진행 중

#### □ 부실경영 책임 관련 몇가지 원칙

1. 경영부실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 필수
  - 대주주의 책임 범위를 단순히 고통분담 차원의 사재출연에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
  - 최근 수년간 부실경영으로 쓰러진 STX, 동양, 용진의 경우 총수가 모두 배임횡령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유죄판결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나옴
  - 해운과 조선 구조조정의 경우 이 부분이 소홀히되고 있음
  - 대우조선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감리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검찰 고발 가능성 열려있음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거래에 대한 수사는 경영부실 책임과는 별개 사안
  -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과 측근 인사의 전횡과 불법행위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태인데 사실상 방치
  -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해 2012년 이후 부실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
2. 경영부실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규명할 때 죽은 기업만 조사하고, 살아있는 기업은 봐주는 잘못된 관행 탈피
  - 경영난 속에서 그룹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살아남은 금호와 동부는 총수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말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신청 직전 기업어음 790억원어치를 사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배

임과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검찰고발과 공정위 신고를 했으나 모두 ‘면죄부’를 받았고,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경영권 회복함

3.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경우 상응하는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요구 필수
  -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은 아니더라도,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처럼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이나 이자율 유지 등도 분명히 지원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필요
  -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채출연 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고통분담 필요
4. 노조(노동자)의 고통분담 필요
  - 노조도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 필요
  -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피해를 최소화
  - 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에서 9만여원의 임금인상 요구는 현대중이 당면한 극심한 경영난과 그로 인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재고 필요 (현대중은 2014년 이후 2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5조원에 육박, 지난해 1차 희망퇴직으로 이미 1300명의 사무직이 회사를 떠난데 이어 5월9일부터는 3천명 수준의 2차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고, 최근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 착수)
5.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 청와대, 정부부처, 회계법인까지 책임 추궁 필요

#### □ 시장 주도와 정부(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 박상인 교수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결국 국민에게 경영실패 책임을 귀결시키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시장 주도 구조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
- 대주주, 근로자, 소액주주,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청산가치와 존속가치(구조조정의 고통분담 비용 포함)를 비교해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영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도덕적 해이 최소화

- 최근 한국금융센터 주관으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이제는 시장이다>에서 주재발표하 유암코의 나중선 구조조정본부장은 “그동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나 법원 주도 방식에만 의존했으나, 시장 주도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잘 활용하면 보다 신속히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기업 회생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
- 시장 주도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 활용(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인수 합병으로 처리,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이용한 구조조정 활용, 회생 불가능한 것은 법정관리 또는 청산)
- 정부 개입(공적자금 투입)은 대규모 실업사태 예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2009년 미국 정부의 지엠 지원)
- 한국 현실은 시장 주도 구조조정이 미흡, 정부개입이라는 예외가 정상이고, 시장 주도 처리라는 정상이 예외인 상황

## □ 그밖의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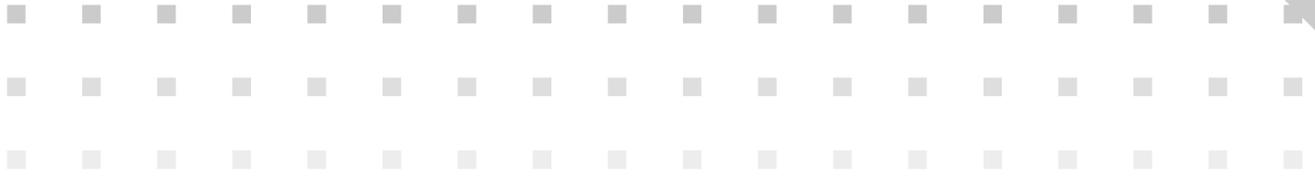
1. 부실기업에 대한 계열사 지원 허용 범위
  - 부실기업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은 아시아나항공 사례처럼 부당지원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
  -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중공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삼성전자 등 주주 계열사에게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
  - 계열사 지원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 마련 필요
2. 부실기업 지원 관련 경영진의 배임 혐의 판단
  - 동일한 부실기업 지원이라도 죽은 기업의 경영진은 배임으로 처벌받는 대신 살아난 기업의 경영진은 처벌받지 않는 이중 잣대 문제 해결 필요
  - 경영계에서도 배임죄 자의적 적용 비판
  - 그룹경영체제인 한국적 현실에서 정상기업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경영판단일 수 있음
3. 재벌에도 부실기업을 정리(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 여부
  - 부실화된 삼성엔지니어링 살리기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 지원

- 삼성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전면 배치
- 삼성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을 포기할 경우 사회가 삼성을 가만히 두겠느냐고 하소연

□ 요약

- 부실기업 폭탄돌리기 중단 필요 → 부실경영 책임 추궁 → 현행 정부(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의 한계 → 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필요

끝.



## 토론문 3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 토 론 문 3

김기식 운영위원장 (더미래연구소)

### ○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입장

-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찬반이 있을 수 없음. 해야 하면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변화되는 경제 조건과 기업 환경에 따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그래 왔음. 우리 한국 경제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산업으로 끊임없이 산업을 구조조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했음.
- 기업 구조조정은 꼭 한계 상황이 아니어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혹은 M&A 등으로 기업 전체 혹은 일부 자산과 사업부문의 매각, 인수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이 경우는 기업의 경영권, 지배권만 변경될 뿐 기업 자체나 고용은 대체로 유지됨. 물론 소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님
- 문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고 이런 구조조정은 대량의 해고, 협력업체의 도산, 대규모 금융 부실 발생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그래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슈가 되는 경우는 이런 한계 기업 처리와 관련된 것임.
- 더 이상 자체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관치를 통해 막으려 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일부에서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서민을 포함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셈이고, 그런 이익은 노동자, 협력업체 보다는 오너 등 기존 기득권자의 이익이 더 크기 마련. 그래서 관치에 의한 구조조정, 혹은 구조조정 회피는 '이익은 사유화되고 부담은 사회화(국민이 부담한다는 의미)'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결론적으로 한계 기업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대체로 옳음. 단 원칙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한 수반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해야 함.

○ 구조조정과 관련된 몇가지 원칙

- 첫째, 책임추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모든 부실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익은 사유화되고 부담만 사회화됨. 더구나 미흡한 책임추궁조치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기 마련.
- 둘째, 이익 균형의 관점을 가져야 함.  
기업과 주주, 노동자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여파를 고려해 여러가지 지원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불가피함.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결국 국민의 부담. 따라서 주주,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간에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함.
- 셋째,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선택, 최악을 막는 결정을 해야 함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위기가 아님. 따라서 위기에 직면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이 아니라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이라는 최악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해야 함. 물론 구조적 원인이든 기업의 내재된 문제이든 자체로 회생이 불가능하고 추가적 부실이 예상된다면 매각과 청산, 청산 후 부분 매각 등을 선택해야 함.
- 넷째,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구체적 현안을 처리해야 함  
해운이나 조선이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할지 최종 목적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함.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하더라도 이런 큰 그림 없이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면 계속 상황에 끌려 다니며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대처하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
- 다섯째, 신속하고 과감해야 함.  
위기가 구조적이면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화끈하게 지원해야 기업이 살아남.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오너문제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며 부실만 더 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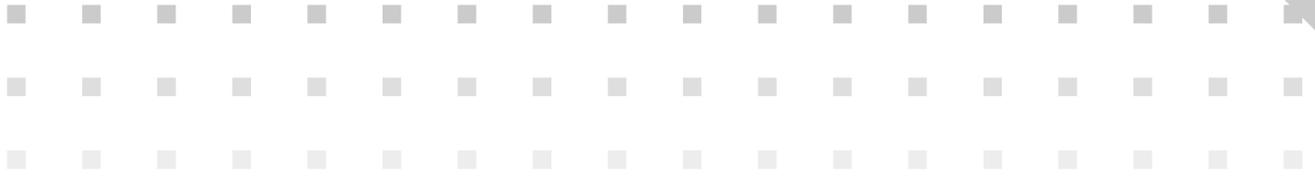
○ 최근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

- 자칭 '시장주의자'들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간동안 구조조정 성적표는 형편없기 그지 없음. 이명박 정부 초기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민 부담만 십수조원 늘린 경우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너의 집착에 끌려다니다가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와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경우, 눈앞의 위기로 등장한 조선 산업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 이제라도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 실행해야 함. 해고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해고자를 위한 고용과 실업대책,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목도 받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우선이고 나아가 적극적 산업지원정책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이를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제대로 실행하는 지 감시하는 한편,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되,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정치권의 구체적 개입은 구조조정의 지연과 책임회피 혹은 책임전가의 빌미가 되기 쉽기 때문임. 단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조치(오너의 경영권 박탈과 지분 소각 등), 주주와 채권자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함,
- 구체적으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 박탈, 지분 소각은 불가피함.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자체로 구조조정과 희생계획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에서만 국책은행 등 채권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그런 점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오너일가는 물론 삼성전자 등도 대주주로서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함.
- 삼성전자 등의 유상증자 등에 대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 논란이 있으나 대주주로서의 책임만큼은 져야 하고, 하지 않는다면 채권단도 만기연장 등 지원을 중단해서 자체로 희생하도록 하거나 만일 채권단이 지원한다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감자 등을 통해 소각해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함. 삼성의 오너와 삼성전자 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은 수십조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대기업에는 손실부담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면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추궁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에 위배됨.

-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과거 IMF 경제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일시에 대규모로 제기되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시적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임.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의 세계경제 변수, 중국의 산업적 성장 등등 내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외부적 변수에 의해 기업은 물론 산업자체를 구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상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장과 제도에 의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도 했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도 정부의 무능과 의지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너기업 위주의 기업현실, 기업 M&A 시장의 미성숙, 정부의 산업정책 실종, 법과 제도의 미비 등이 원인임.
- 원칙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현대상선의 금융부채중 은행 채권단의 부채가 1/4 정도에 불과해서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율협약이 실패하면 남은 길은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부채는 물론 모든 채권이 동결됨. 금융권과 선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부담을 공평하게 져야함.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다면 단호하게 법이 정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해당사자들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됨. 그렇지 않고 잘못된 관치를 하면 특정 채권자(대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가 부담을 지고(채무조정, 출자전환 등) 자금을 지원해도 해당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겨가는 경우(채권회수 등)가 발생함. 실제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음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의 핵심은 시장의 원칙, 법과 제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절차와 제도를 동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그래야 잘못된 관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예측가능성속에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됨. 다행히 19대 국회 마지막에 법 개정안이 통과됨.



## 토론문 4

김경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 -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중심으로 -

김경울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회계사)

### 1. 대우조선해양(이하 ‘회사’)의 분식 혐의

#### 1) 2016년 4월 14일자 회사의 정정공시 이전 과거 2008년 이래 2014년까지의 실적

(단위: 억원)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당기순이익	720	2,517	1,370	7,432	7,436	5,775	4,017
영업현금흐름	△ 5,233	△ 12,681	△ 7,747	△ 310	△ 1,336	△ 12,796	△ 3,199
영업이익	4,543	4,242	4,516	10,322	10,111	6,845	10,316

일반적인(장기적 관점에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관계

$$\text{영업이익} = \text{영업현금흐름} - \text{감가상각비}$$

$$\text{영업현금흐름} = \text{영업이익} + \text{감가상각비}$$

#### 2) 2016년 4월 14일자 회사 및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정정공시

- 2014년 -

(단위: 백만원)

	수 정 전	수 정 후	차 이
매출	15,159,471	13,842,320	1,317,151
매출원가	14,109,159	14,011,037	98,122
매출총이익(손실)	1,050,312	△168,717	1,219,029
영업이익(손실)	454,324	△754,565	1,208,889
당기순이익(손실)	71,953	△830,156	902,109

- 2013년 -

(단위: 백만원)

	수 정 전	수 정 후	차 이
매출	14,080,037	13,499,205	580,832
매출원가	13,151,246	13,471,382	320,136
매출총이익(손실)	928,791	27,823	900,968
영업이익(손실)	424,225	△789,820	1,214,045
당기순이익(손실)	251,718	△673,576	925,294

또한 회사는 위와 같은 차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

내역	금액(억원)	
	2014년	2013년
총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	4,321	6,056
계약금액 증액 추정오류	4,443	773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액 추정오류	257	2,424
계	9,021	9,253

※ 건설, 조선업 등 이른바 수주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식수법

(사례-A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12.6월 증선위 의결)

2015.10.28 금융위원회 등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하 '제고방안')中

이와 같은 분식행위는 원가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저가수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계속 창출) 계속된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연쇄적인 조선산업 일반의 불황을 야기시킴. 따라서 부실로 말미암은 분식이 이제는 반대로 분식조차도 회사부실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위처럼 회사의 분식행위에 대한 윤곽과 규모는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요주주이자 주요인사들을 회사에 파견하였던 산업은행, 금감위 등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상황임. 오히려 회계법인<sup>1)</sup>, 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끊임 없이 알리바이를 재생산하는 중임.

1) 조선일보 2016년 5월 30일자 사설 '不法·부실 회계법인이 不實 조선사 실사한다니'에서도 지적하듯이 현재 구조조정 국면에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회계법인임

- 공사진행률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부족
  - 원가기준 공사진행률이 실제 공정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장별 리스크 관련 정보 불충분
- 정보 부족으로 외부감사 등 객관적 검증이 곤란
  - 대다수 외부감사인인 회계 전문가로서 사업 진척률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실질적 감사에 한계
  - 금융당국도 객관적 정보가 부족한 사유 등으로 감리에 상당한 기간 소요

2015.10.28 금융위원회 등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하 '제고방안')中

소결로써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계부정의 막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 등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임. 가장 먼저 이들의 혐의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2. 구조조정의 수혜자는? 또는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구조조정의 통상적인 방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고
채권 채무 등 재무구조 조정	(대)주주, 채권자 등	재무구조 조정이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향유
자산 매각	조선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산업자본 및 사모펀드 등의 자본	산업은행, 금융위 등의 주요주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도 조선산업의 위기를 회복불가능한 구조적인 것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음. 귀결로써 사업부문 등에 대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을 강행할 수 있음.
인력 구조조정	주주 및 근로자	인력 구조조정에 관련한 생산된 부를 주주가 가져갈 것이냐, 근로자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임

이 중 인력 구조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회사의 고용행태는 대단히 파행적이고 이미 우려스러운 단계임

- 2015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 사내 근로자의 고용형태

	소속 근로자		소속외근로자 <sup>2)</sup>	계
	정규직	기간제		
2015년	12,973	453	36,857	50,283
2014년	12,829	379	30,666	43,874

[출처: 고용형태공시 <https://www.work.go.kr/gongsi/empReportInfo/retrieveGongsiList.do>]

※ 2015년과 2014년의 가동률<sup>3)</sup>

- 2015년 -

- ① 당기목표 가동시간<sup>4)</sup> = 39,600,080 MH
- ② 당기실제 가동시간<sup>5)</sup> = 50,634,444 MH
- ③ 평균가동률 = 127.86% [ ② ÷ ① ]

- 2014년 -

- ① 당기목표 가동시간 = 38,732,027 MH
- ② 당기실제 가동시간 = 45,558,581 MH
- ③ 평균가동률 = 117.6% [ (2) ÷ (1) ]

※ 2015년과 2014년 대우조선해양 직원 평균보수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남	12,249	-	251	-	12,500	17.4	957,086	77	-
-	여	606	-	93	-	699	6.6	31,969	46	-
합 계		12,855	-	344	-	13,199	16.8	989,055	75	-

- 2) 공시의무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로 정.
- 3) 일반제조업체의 양산체제 제품생산과는 달리 공장 생산설비의 가동률로 측정하기는 곤란하여 생산인력의 최대 투입 MH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비작업시간을 제외한 실투입 MH로 평균가동률을 계산
- 4) 평균생산인원×조업가능일수×목표출근율×목표근무시간
- 5) 제품(선박/해양)생산에 실 투입된 MH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	남	12,565	290	-	12,855	17.5	968,428	75	-
-	여	627	120	-	747	4.9	34,174	46	-
합 계		13,192	410	-	13,602	16.7	1,002,602	74	-

[출처 : 사업보고서]

## ※ 2016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수주 잔량

구 분	(단위 : 백만원)				
	기초잔액	신규수주	기타증감액(+1)	공사수익인식(+2)	분기말잔액
선 박	18,970,291	147,648	(431,780)	(1,509,916)	17,176,243
해양 및 특수선	14,426,162	-	(5,831)	(1,768,336)	12,651,995
건 설	844,240	110,053	1,360	(109,784)	845,869
기 타	37,176	-	2,488	(2,391)	37,273
합 계	34,277,869	257,701	(433,763)	(3,390,427)	30,711,380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이 빈 카운터스(재무전문가)에 휘둘러 비용절감과 영업이익 수치에만 급급하면 기업은 반드시 몰락하게 된다<sup>6)</sup>”

“한국 조선업에 있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전문가들(핵심 설계인력과 숙련된 생산인력)을 더욱 보강하고 모으는 작업이다. 단기적인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한 무모한 인력 구조조정은 한국 조선업의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sup>7)</sup>”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의 화살은 부실의 책임자인 산업은행 및 금융위를 향해야 할 것이며, 방조자인 회계법인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임.

아울러 구조조정을 외치며 국가경제의 한 축인 가계를 파탄으로 몰아 넣고 주주이익극대화를 꾀하는 이른바 재무전문가, 경제전문가를 경계해야 할 것임.

6) GM 부회장 밥 루츠. 경실련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14쪽에서 재인용

7) 박무현 연구원(하나금융투자 조선/기계 Analyst) 경실련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14쪽